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 개정시행

규정 위반시 1,000만원-2,000만원 과징금 부과

해양수산부는 정부 규제개혁 과제 중 해상운송 분야에 포함된 현행 운임공표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76호(1999 10. 8) 로 제정고시된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을 4월10일부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금번에 개정시행된 운임공표의무를 관련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동요령을 개정한 것은 해운시장에서의 운임 덩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운임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임공

표 의무자인 외항운송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와함께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운임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요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운임 공표내용을 축소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할증료 기타 부대요금'을 BAF(Bunker Adjustment Factor),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THC(Terminal Handling Charge)로 제한했다.

또 운임 공표대상 항로 및 대상지역을 축소했다. 대상 항로를 10개 지역 35개 항만으로 축소하고 수입화물 운송항로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운임 공표대상 항로별 품목이 축소·조정됐다. 대상 품목을 항로별로 물동량 상위 3개 수출품목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운임 공표방법이 개선됐다. 운임을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이외에 외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컴퓨터통신망에도 게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운임 공표시기가 조정됐다. 운임 공표는 연 4회로 정례화 하고, 운임이 공표된 운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운임을 적용하기 5일 이전에 이를 공표하도록 조정했다.

[운임의 공표대상 항로 및 지역]

항로	P O R T
북미(4)	Losangeles, New York, Seattle, Toronto
중남미(2)	San Antonio, Santos
구주(5)	Antwerp, Hamburg, Lehabre, Rotterdam, Southampton(or Felixstowe)
지중해(4)	Barcelona, Beirut, Lattakia, Piraeus
중동(3)	Bandar Abbas, Dammam, Dubai
호주(2)	Melbourne, Sydney
동남아(3)	Hong Kong, Kaohsiung, Singapore
한일(4)	Hakata, Kobe, Shimonoseki, Yokohama
한중(7)	Dalian, Dandong, Qingdao, Shanghai, Tianjin, Weihai, Yantai
한러(1)	Vostochny